

#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20-59 |
|----------|---------|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일

발 의 자: 윤유선, 송영섭, 정정희, 이의걸,  
김용원, 김성한, 황영호, 김현희  
강선영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지역경제과, 협치분권과

라. 입법 예고 : 2020. 6. 5. ~ 2020. 6. 9. 결과: 의견 없음

### <일괄개정 조례안 목록>

| 연번 | 소관부서   | 자치법규명                             | 개정내용   |
|----|--------|-----------------------------------|--|
| 1  | 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  |
| 2  | 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  |
| 3  |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근로환경 → 노동환경<br>· 근로형태 → 노동형태                                   |
| 4  |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근로복지시설 → 노동복지시설<br>· 근로 → 노동<br>· 근로자 → 노동자<br>· 근로 여건 → 노동 여건 |
| 5  |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br>· 근로조건 → 노동조건                                     |
| 6  |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br>· 근로시간 → 노동시간                                     |
| 7  |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  |
| 8  |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 근로자 → 노동자  |
| 9  | 지역경제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근로자대표 → 노동자대표  |
| 10 | 협치분권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근로자복지 → 노동자복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5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계획)”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환경 개선을”을 “노동환경 개선을”로,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노동환경 개선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노동자의 노동 여건”으로 하며, 제

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3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며,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을 “(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 제5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 제6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

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근로자복지”를 “노동자복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복지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u>근로자</u>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br/>-----.</p> <p>1. 2. (현행과 같음)</p> <p>3. -----<br/>-----<br/>----- <u>노동자</u> -----<br/>-----<br/>-----.</p> |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p> <p>① ~ ③ (생략)</p> <p>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u>근로자</u>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p>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br/>-- <u>노동자</u> -----<br/>-----<br/>-----.</p> |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강서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u>근로환경</u>을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br/>----- <u>노동환경</u> -----<br/>-----<br/>-----<br/>-----.</p>                                  |
| <p>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u>근로형태</u>를 말한다.</p> <p>2. ~ 4. (생략)</p> | <p>제2조(정의) -----<br/>-----.</p> <p>1.-----<br/>-----<br/>-----<br/>-----<br/>-----<br/><u>노동형태</u>-----.</p> <p>2. ~ 4. (현행과 같음)</p> |
| <p>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u>근로환경</u>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4조(구청장의 책무) -----<br/>-----<br/>-----<br/>----- <u>노동환경</u>-----<br/>-----<br/>-----.</p>  |
| <p>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p>  | <p>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p>  |

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  
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이하 “개  
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 5. (생략)

제11조(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환경 조  
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  
----- 노동환경-----  
-----.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①  
-----  
-----  
----- 노동환경 개선-----  
-----  
-----  
-----  
-----  
-----  
-----.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노동환경 -----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  
-----  
----- 노동환경 -----  
-----.

② (현행과 같음)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u>근로복지시설</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u>근로복지시설</u>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근로자</u>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p> <p>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u>근로복지시설</u>(이하 ‘<u>근로복지시설</u>’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위치) <u>근로복지시설</u>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p> <p>제4조(사업) <u>근로복지시설</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근로자의 근로 여건</u> 등 실태</p> | <p>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u>노동복지시설</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br/>-----<br/>-----<br/><u>노동복지시설</u>-----<br/>----- <u>노동자</u>-----<br/>-----<br/>-----.</p> <p>제2조(적용 범위) -----<br/>----- <u>노동복지시설</u>(「<u>근로복지 기본법</u>」 제28조에 따른 <u>근로복지시설</u>을 말한다. 이하 “<u>노동복지시설</u>”이라 한다)-----<br/>-----<br/>-----.</p> <p>제3조(위치) <u>노동복지시설</u>-----<br/>-----<br/>-----.</p> <p>제4조(사업) <u>노동복지시설</u>-----<br/>-----.</p> <p>1. <u>노동자의 노동 여건</u> -----</p> |

파악

-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 4. · 5. (생략)
-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생략)

제5조(이용 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가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노동자 -----
- 3. 노동 -----
- 4. · 5. (현행과 같음)
- 6. ----- 노동자 -----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 자격) 노동복지시설-----  
-----  
-----  
-----  
-----  
----- 노동 -----  
-----.

제6조(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  
----- 노동복지시설  
-----  
-----  
-----  
----- 노동복지시설 --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노동복지시설-----  
-----

|   |   |
|---|---|
| <p>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u>근로복지시설</u>을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사람에게 <u>근로복지시설</u>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u>근로복지시설</u>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br/>-----<br/>-----<br/>-----<br/>-----.</p> <p>② ----- <u>노동복지시설</u> -----<br/>----- <u>노동복지시설</u> -----<br/>-----.</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노동복지시설</u> -----<br/>-----<br/>-----<br/>-----<br/>-----.</p> |
|---|---|

##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u>근로자</u>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p> | <p>제1조(목적) -----<br/>-----<br/>----- <u>노동자</u> -----<br/>-----<br/>-----</p> |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 3.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2.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2조(정의) -----  
-----.

1. ----- 노동자들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  
-----  
-----  
-----  
-----.

1. -----  
----- 노동자 -----
2. -----  
-----  
-----  
----- 노동자 -----
3. -----  
----- 노동자 -----

②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생략)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 3. (생략)
  -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5. (생략)
- ③ · ④ (생략)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  
한다.
  -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  
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 2. · 3. (생략)
- ③ ~ ⑤ (생략)

-----  
-----  
----- 노동자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 노동조건 -----  
-----
  - 5.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 노동자 -----  
-----  
-----
- 2.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u>근로자</u>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근로자</u>의 임금조건, <u>근로시간</u>,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③ (생략)</p>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br/>-----<br/>-----<br/>-----<br/>-----<br/>--- <u>노동자</u>-----<br/>-----<br/>-----<br/>-----<br/>-----<br/>② ----- <u>노동자</u>-----<br/>- <u>노동시간</u>-----<br/>-----<br/>-----<br/>-----<br/>-----.</p> <p>③ (현행과 같음)</p> |

##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u>근로자</u>,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p> | <p>제10조(교육·홍보) -----<br/>-----<br/><u>노동자</u>, -----</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 <p>-----<br/>-----<br/>-----<br/>-----<br/>-----.</p> |

###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12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저소득 장애인 <u>근로자</u>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p> <p>5. · 6. (생략)</p> | <p>제12조(고용촉진) -----<br/>-----<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노동자</u>-----<br/>-----<br/>-----</p> <p>5. · 6. (현행과 같음)</p> |

###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br>① · ② (생략)<br>③ 위원은 강서구의회의 의원 1인(총무·재무위원회 위원중 1인), 행정관리국장,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u>근로자대표</u> 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br>-----<br>-----<br>-- <u>노동자대표</u> -----<br>-----<br>----- |

###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5. (생략)<br>6. <u>근로자복지</u> ,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br>7. · 8. (생략)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5. (현행과 같음)<br>6. <u>노동자복지</u> , -----<br>-----<br>7. · 8. (현행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강서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이하 ”감정노동 종사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 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2.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1. 생활임금의 수준
  -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원 1인(총무·재무위원회 위원중 1인), 행정관리국장,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근로자대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